



사업장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1)

연세대의대 외래교수 이 용 호

1. 들어가면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각종 의학적 응급상황(Medical Emergency)에 대하여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그런데 동료 근로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접했을 때 당황하거나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며, 사업장내 의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현장에서의 적절한 조치 없이 무조건 신속하게 아무 방법으로나 서둘러 후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이다.

그러나 응급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즉시 도움을 주어야 생명을 구하든지 상황을 더욱 악화되게 만들지 말도록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학적 전문지식

이 미흡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First Aid)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여 습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업장내 보건관리자들은 정기적으로 흔히 사업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응급상황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근로자들에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응급상황에서의 일반적 상황 설명과 가장 흔한 출혈(Bleeding), 골절(Fracture), 화상(Burn), 쇼크(Shock)방지와 심장마비시에 행하는 심폐소생술(CPR)을 자세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응급처치(First Aid)

1) 응급처치란 무엇인가?

응급처치는 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응급환자를 다루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가능한 것이지만 원래의 의미는 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비의료전문가(Non-medical Professional)가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응급시 생명 구조라고 하면 알아듣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흔히 구조라 함은 각종 사고현장에서 안전을 목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견뎌내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119에서는 전문 응급구조사(Emergency Medical Technician : EMT)들의 출동으로 화재현장에서

의 구조 뿐만 아니라 상병환자의 응급처치도 수행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혼돈되고 있다. 응급처치는 상병자를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 뿐만 아니라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고 초기에 회복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급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에서부터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 없이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체의 행위가 응급처치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동료 근로자들의 응급조치 여하에 따라서 인간의 삶과 죽음이 좌우 되기도 하며, 회복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작업 현장에서 보내고 있으며, 함께 일하는 동료 근로자는 응급처치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문제는 응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아무런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후송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2) 응급처치시 알아두어야 할 법적 문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급처치를 행함에 있어 기본지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나서기에 주저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혹시나 응급처치가 잘못되어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법적문제를 너무 앞세우다 보면 아무도 응급상황에 있는 동료 근로자를 응급처치 할 염두가 나지 않을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응급처치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고현장에서 생명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좋은 의도로 올바른 응급처치에 임했다면 응급처치자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그러나 사업장내 보건관리자나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 자로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기하거나 방치 또는 법적으로 인정된 치료를 벗어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면 이에 따른 법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받게 된다. 따라서 보건관리자는 응급처치를 수행하기 전 반드시 응급환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음을 밝히고 앞으로 실시할 응급처치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하며, 환자는 명시적으로 이에 동의할 경우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그러나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는 응급처치에 대해 환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응급환자를 그대로 두거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처치를 그만 둘 경우에는 유기에 해당되며, 응급

처치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의무의 불이행이 성립된다. 잘못된 응급처치 수행으로 부상이나 손해를 야기하는 것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의료비용 등의 금전적 손실, 노동력 상실도 포함된다.

참고로 우리나라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의 정의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응급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기타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상식적으로 급하다고 생각되는 환자는 일단 응급환자로 생각하고 응급처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법에서 말하는 응급조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박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응급처치를 행하기 위해서는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증 소지자격에 따라 응급처치의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규정은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지도록 명시된 것인 바, 사업장에서 동료근로자에 의한 응급 처치는 이러한 전문 응급처치요원이 도착되기 전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사망률 및 불구율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응급구조자의 역할

사업장내 응급처치는 어떤 손상이나 급성 질병이 발생된 근로자에게 구급차나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움을 주거나 처치를 하게 된다.

최초의 응급처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주변상황이 파악되기 전에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응급상황에서는 동시에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응급조치의 중요 단계에 따라서 침착하게 구조를 진행하여야 한다. 응급상황에서의 중요 단계란 첫째 상황파악, 둘째 안전유지, 셋째 응급처치, 넷째 구조요청의 단계를 말한다.

1) 상황파악 : 침착하고 재빨리 상황을 파악한다. 피해자와 구조자 자신에게 위험에 계속되는지 파악한다. 구조자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사고현장의 안전유지 : 피해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피신시킨다. 일차 구조자가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은 금기이다.

3) 환자의 부상정도 및 응급조치 : 환자가 많으면 각 환자의 부상을 평가하여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4) 구조요청 : 전문 구조대를 요청했는지, 구조대가 현장으로 출발했는지 신속하게 확인한다.

사고 현장에서의 응급구조자는 다음과 같

은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1) 자신의 감정을 안정시킨다.
- 2) 잠시 신중하게 생각하는 순간을 갖는다.
- 3) 일차 구조자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4) 상식적인 모든 지식을 총동원한다.
- 5)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4. 마감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통계에서 사인분류가 가능한 상병을 분석한 결과 제1위가 뇌혈관계통의 질환인 뇌출혈, 뇌경색, 순환기계질환인 심근경색,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등이었고 제2위가 각종 악성 종양인 암이 차지하였으며, 제3위가 각종 사고에 의한 사망이 차지하였다. 응급처치의 주요 대상 질환은 순환기계 질환과 각종 사고들인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심장이 정지되어 있는 환자가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으면 100% 모두 사망에 이르는데 반하여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 구급차를 불러 전문 응급의료진에 의한 적시의 보살핌으로 30~40%까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동료 근로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을 반복하여 교육 훈련을 받는다면 근로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자의 뇌리 속에 깊이 새겨 놓아야 할 것이다.